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41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박 정·문금주·홍기원

손명수 · 윤후덕 · 한병도

박홍배 • 천준호 • 신정훈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 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법률 제 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 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한 군부대 이전 절차) ① 군부대 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부대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부대 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이전후보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 건의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 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국무조정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이 견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부 및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
		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공무
		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
		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
		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
		가로 구성한다.
<u><신 설></u>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에 의한 군부대 이전 절차) 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
		을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

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
부장관은 군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부대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부대 이전
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
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이전후보지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무조정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 른 이견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 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구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